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

발의연월일 : 2026년 10월 2일
대표발의자 : 전 정 의원
공동발의자 : 조용근 의원, 이혜숙 의원, 김성호 의원
찬 성 자 : 김안나 의원, 이원우 의원, 이승희 의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송파구 전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하고,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지역 관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지역별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특구 활성화 및 관광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사항(안 제1조~제4조)

나.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다. 관광진흥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라.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안 제8조)

마.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바. 잠실관광특구 및 진흥계획(안 제10조~제11조)

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안 제12조)

아.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및 세부기준(안 제13조)

자. 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7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나. 합　　의: 관계부서 합의 완료(관광진흥과)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별첨2】

라. 기　　타

1) 관계법령: 【별첨1】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2】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진흥

제5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의 발굴·개발 및 연계

2. 관광콘텐츠의 개발·운영 및 관광상품의 개발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정보의 제공 및 관광안내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진흥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안내 및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 접수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등의 홍보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관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
2. 관광진흥사업 및 민·관 협력사업의 발굴·추진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관광특구

제10조(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구의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잠실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관광특구진흥계획) 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특구 활성화) 구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와 구의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2. 관광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3. 그 밖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의 사용)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관광정책위원회

제14조(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진흥계획 및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관광·문화·지역경제·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3. 관광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첨1】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4. 10. 22.〉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

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별첨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필요시 조치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임기제 8급 김윤후